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8. 10. 15. 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#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황 규 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8년 10월 2일
- 회부일자: 2018년 10월 5일

3. 제정 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정의(안 제2조)
-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(안 제4조)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수탁기관의 책임 소재 및 위탁기관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3조)
- 처리상황의 감사 및 종합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및 제17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사를 명시하고,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고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 사료되며,
- 안 제4조에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,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것과 안 제16조에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한 것, 안 제17조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위탁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다양한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